

2015.02.26

‘한 -중 FTA 가서명 완료’

- 산업통상자원부의 한-중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('14.11.10) 이후, **2015.2.25(수) 한-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.**
- 이번에 가서명한 한-중 FTA 협정문(영문본)이 **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(www.fta.go.kr)를 통해 공개**되었으며 한글본은 금번 영문 협정문 공개 이후, 번역·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.
- 2015년 상반기 중 한-중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, 동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.
- 관련하여 주요내용 요약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내용

1. 양허 현황

□ **최장 20년 이내에 중국 시장의 수입관세를 철폐**

[중국]

- 품목수 71%(5,864개), 수입액 66%(1,105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, 품목수 91%(7,428개), 수입액 85%(1,417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

[한국]

- 품목수 79%(9,690개), 수입액 77%(623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, 품목수 92%(11,272개), 수입액 91%(736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

2015.02.26

2. 주요분야의 협상결과

□ 관세철폐 방식

※ 한-중 FTA 관세 철폐를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 (linear cut) 방식으로,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, 차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.

▪ [철강]

중국은 냉연강판,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 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. 우리는 중소,중견기업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,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

▪ [석유화학]

중국의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(이온교환수지, 고흡수성수지, 폴리우레탄 등)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.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기업의 민감제품 보호

▪ [섬유]

주력수출품목(편직물) 및 유망품목(기능성 의류, 유아복 등)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. 우리는 순면사, 의류, 모사,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 제외

▪ [기계]

중국은 자국 내 주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(포장기계, 환경오염 저감 장비 등)를 개방.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요소(볼 베어링 및 부분품) 및 전동공구(전기드릴 및 기타) 등을 보호

▪ [자동차·부품]

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, 우리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·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은 제한적임

▪ [전자전기]

중국은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 및 의료기기, 가전부품 등을 개방. 우리는 전동기·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시장을 중·장기 관세철폐로 보호

▪ [생활용품]

중국은 콘택트렌즈,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함. 우리는 핸드백, 골프채 등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(15~20년) 관세 철폐

2015.02.26

3. 원산지

□ (규정)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(rules) 규정

-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*과 보충적 원산지기준** 등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(rules) 규정
 - * ①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②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(PSR 충족 전제)
 - ** 미소기준, 누적, 불인정공정, 대체재, 간접재, 직접운송 등에 대해 규정
- EEZ 기국주의, 섬유류 미소기준의 중량기준 인정 등 우리 既체결 FTA 원산지규정과 일관성을 유지

□ (절차)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수출입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특혜관세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 명시

- 미화 700불 이하 수출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
-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 가능
- 한편, 불법적인 특혜관세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, 특히 중국 기체결 FTA 최초로 직접 방문검증 절차 도입
- 원산지 관련 양국간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당국간 협의 절차 및 위원회 조항 마련